서울특별시민창안제도운영규정폐지규정을

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시민창안
제도운영규정

1998년 1월 5일

서 울 특 별 시 장 직무대리 강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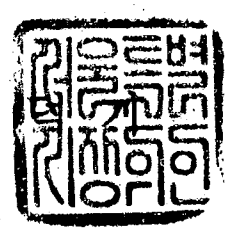

서울특별시민창안제도운영규정폐지규정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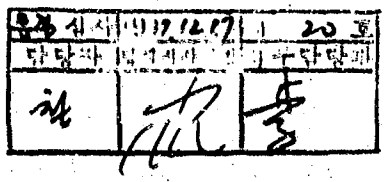

1. 폐지사유 및 주요골자

시정전반에 관한 시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하므로서 시민의 시정참여를 활성화 하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민창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민창안제도운영조례 및 동 조례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민창안제도운영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서울특별시민창안제도운영조례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　　의 : 필요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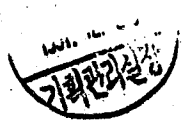

서울특별시훈령 제 호

서울특별시민창안제도운영규정폐지규정안

서울특별시민창안제도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

서 울 특 별 시

우 100-744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 (02) 731-6153 / 전송 731-6309 /
처리부서 : 시정개발담당관(시청 본관 4층) 담당 : 오 세 량

문서번호 시정 12452-1307
시행일자 1997. 12. 20

수신 법무담당관
참조

선결	법무담당관 3		지시	
접수	일자 시간	1997. 12. 20	결재·공람	법제계장
	번호	4551		
처리과				
담당자	김형주			

제목 서울특별시민창안제도운영규정폐지규정안 제출

서울특별시민창안제도운영규정폐지규정안을 별첨과 같이 제출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 : 서울특별시민창안제도운영규정폐지규정안 1부. 끝.

시 정 개 발 담 당 관

서 울 특 별 시

우 100-744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 (02) 731-6153 / 전송 731-6309 /
처리부서 : 시정개발담당관(시청 본관 4층) 담당 : 오 세 량

문서번호 시정 11150-1306
시행일자 1997. 12.
(제 1 안)
수신 내부결재
참조

취급		시 장	
보존			
기획관리실장	전 결	12.10	
정책기획관		법무담당관실사필	
시정개발담당관			
재도개선계장		기안 / 오세량	협 조

제목 서울특별시위임전결규정폐지규정안

시장"훈령"으로 되어있는 서울특별시위임전결규정을 "규칙" 으로 재정함에 따라서울특별시위임전결규정을 폐지코자 합니다.

첨부 : 서울특별시위임전결규정폐지규정안 1부. 끝.

서 울 특 별 시 장

(제 2 안)
수신 법무담당관
제목 서울특별시위임전결규정폐지규정안 제출

서울특별시위임전결규정폐지규정안을 별첨과 같이 제출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 : 서울특별시위임전결규정폐지규정안 1부. 끝.

결재 1997. 12. 10 기획관리실장 No. 341

시 정 개 발 담 당 관